

글로벌어학센터 규정

제정 2013. 3. 1. 개정 2013. 7. 1.
개정 2015. 8. 31. 개정 2016. 7. 28.

제 1 장 총 칙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대경대학교 글로벌어학센터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명칭) 명칭은 대경대학교 글로벌어학센터(이하 “어학센터” 라 한다)이라 한다.

제3조(사업) ① 어학센터는 다음과 같은 사업을 수행한다.

1. 제2 언어로서의 한국어 교육 사업
2. 국내·외 관련 기관과의 한국어 교육 공동 운영 사업
3. 기타 위의 각 호에 부수되는 사업

② 제1항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운영 지침은 센터장이 따로 정하여, 총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.

제 2 장 조 직

제4조(조직) ① 어학센터에는 센터장을 두며, 본교 부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관련학과 전공자로 관련 업무 5년 이상의 경력자로 한다. <개정 2013.7.1., 2016.7.28.>

② 센터장은 어학센터를 대표하며 어학센터의 운영에 관한 제반 업무를 총괄한다.

제5조(행정팀) ① 행정팀에 행정팀장과 직원을 둘 수 있다. <개정 2015.8.31.>

② 어학센터의 행정 및 교육업무를 위해 예산범위 내에서 계약직원과 내·외국인 비전임교원, 시간강사를 임용할 수 있다. <신설 2015.8.31.>

제6조(한국어 강사) ① 어학센터에는 한국어 강의를 담당할 강사를 둘 수 있다. <개정 2016.7.28.>

② 강사의 위촉에 관한 사항을 총장에게 보고한다. <개정 2016.7.28.>

③ 계약직원, 비전임교원 및 시간강사의 임용에 관한 사항은 우리 대학교 관련 규정에 따른다. <개정 2015.8.31.>

제7조 삭제 <2013.7.1.>

제8조(조교) 어학센터의 교수 학습 활동 지원을 위하여 약간 명의 조교를 둘 수 있다.

제 3 장 운영위원회

제9조(운영위원회) 어학센터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.

제10조(구성 및 임기) ① 운영위원회는 센터장을 포함하여 총장이 위촉하는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센터장이 된다. <개정 2013.7.1.>

② 당연직 위원인 센터장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. 다만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. <개정 2013.7.1.>

제11조(소집 및 회의) 운영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며,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12조(심의사항) 운영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.

1. 어학센터의 운영 계획 및 기본 정책에 관한 사항
2. 교육과정 및 주요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
3. 강사 초빙, 강사 교육 및 관리에 관한 사항
4. 소관 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
5.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

제 4 장 재 정

제13조(재정) 어학센터의 운영 경비는 교비예산과 교육원 운영수입 및 기타 수입금으로 한다.

제14조(회계연도) 어학센터의 회계연도는 우리 대학교 회계연도에 따른다.

부칙

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

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

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5년 8월 3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

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6년 7월 28일부터 시행한다.